
'12년 도 ~'14년 도 개 인 정보 보호 기본 계획

2012. 1.



행 정 안 전 부

본 제1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 제9조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에 적용되며, 적용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시행계획 작성시 본 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2012년 및 2013년 시행계획은 '12. 2. 28.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행계획 작성방향>

- 부처 소관 법령에 따른 감독 업종이 있는 경우(정보통신·금융·교육·의료·복지 등)에는 ① 소관 업종의 개인정보보호업무에 적용할 사항과 ② 해당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업무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함
- 부처 소관 법령에 따른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업무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함

<일러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법
- 행정안전부 : 행안부
-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 금융위원회 : 금융위
- 교육과학기술부 : 교과부
- 보건복지부 : 복지부
- 고용노동부 : 고용부

목 차

I . 추진배경	1
1.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침해 증가	2
2.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변화	4
3. 해외 개인정보보호 정책동향	5
II . 비전 및 전략	8
1. 정책환경 : 선진 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9
2. 비전	10
3. 추진전략	11
III . 과제별 추진방안	12
1. 개인정보보호 체계 정립	13
(과제1) 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 정비	
(과제2) 범정부 협의체계 구축	
(과제3) 국제협력 강화	
2.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19
(과제1) 개인정보보호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	
(과제2)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체계 구축	
(과제3) 연구기반 구축 지원	
3.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25
(과제1)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과제2)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과제3)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4. 사회적 인식제고	31
(과제1) 자율규제 활성화	
(과제2)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	
<참고자료>	
· 과제별 소관기관 및 추진 일정표(종합)	

I . 추진배경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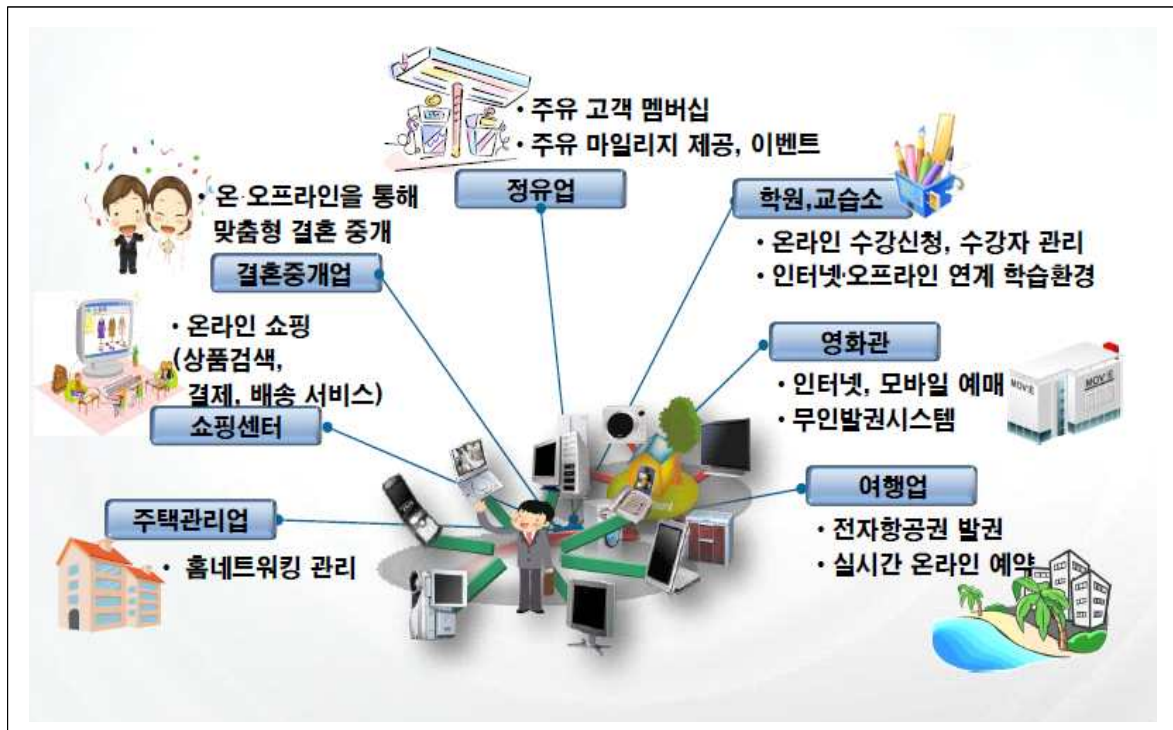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침해 증가

- ◇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전자정부 구축, 마케팅 등에 개인정보가 폭넓게 사용
- ◇ 개인정보의 가치증대, 해킹기술 진화에 따라 침해사고도 증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증가

- 개인정보는 행정 효율성 제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소비자 선호도 조사 등의 목적으로 공공·민간 모든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
 - * 정보화 진전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핵심자원으로서 광범위하게 이용
- 특히, 온라인상 실명인증·성인인증·연령확인, 연계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주소 등 수집·이용 급증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확대>



□ 개인정보 침해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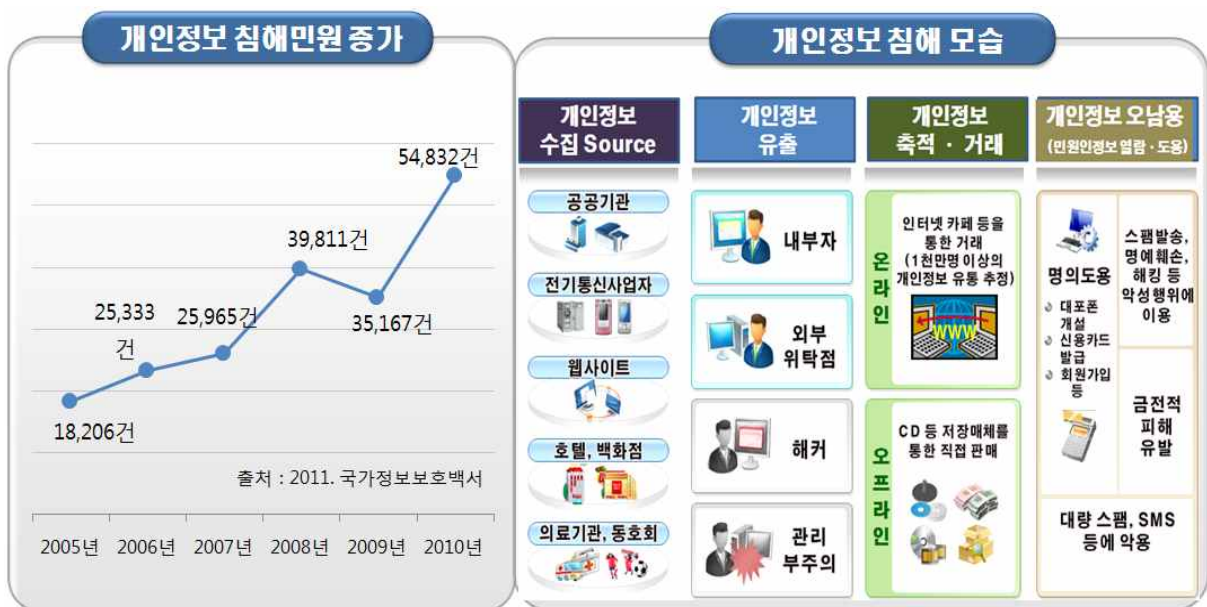
- 개인정보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출위험이 높아지고, 해킹 기술의 발달로 대규모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

*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 옥션 1,800만건('08.1), 신세계몰 390만건('11.3), 현대캐피탈 175만건('11.4), 한국엠펙스 35만건('11.8), SK컴즈 3,500만건('11.7), 넥슨 1,320만건('11.11)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 이용 · 침해>



-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대량으로 유출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2차 피해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폭



2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변화

- ◇ 종전에는 개별법에 따른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체계 운영으로 통합적 개인정보 보호원칙 부재
- ◇ '11.3.29.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 일반원칙 정립

□ 개별법 중심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

- '11.9.29까지는 공공·정보통신·신용정보 등 분야별 개별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규정
 - * 공공기관 개인정보법('94), 신용정보법('95), 정보통신망법('99) 등
- 공공부문은 행안부, 민간은 개별법 소관부처가 개인정보보호업무 관장
 - * 정책의 통일성 확보 곤란, 소규모 사업자 등에 사각지대(약300만 사업자) 발생

□ 일반법 지위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일반법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11.3.29.공포, '11.9.30.시행)
 - * 종전 약50만(공공민간개인정보처리자) → 약350만(모든 개인정보처리자)으로 적용대상 확대
-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조정기구로서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 강화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 단계별 보호기준 정립
- 사상·신념 등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 *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리 허용
- 급격하게 증가하는 CCTV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 강화
 - * 설치목적에 엄격하게 제한하고,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내판 설치 의무화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유출통지·신고제도, 집단분쟁제도, 단체소송제도 도입 등으로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강화

-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지침’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표준 확립
- ◇ ‘80년 이래 적극적인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 전환

□ 국제 규범

- OECD는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 가이드라인(1980)’으로 수집·이용·관리에 따른 8개 보호원칙 제시
 - EU 및 UN의 지침과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에 나침반 역할
 - * 8개 보호원칙 : 정보수집 제한, 목적의 명확화, 정보의 정확성, 사용제한, 보안, 투명성, 개인 참여, 책임
- EU는 개인정보보호를 소비자 보호나 전자상거래의 하위규범이 아닌 인권보호의 일부로 보고, 정부의 개입을 통해 공공의 역할 강조
 - 개인정보 침해를 개인의 자유 또는 인권침해와 동일시(유럽인권협약, 1950)
 -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제정,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지침, 1995)
 - * 독일 : 연방정보보호법 제정(1977) 및 연방정보보호청 설치
 - * 프랑스 : 정보처리 및 축적에 관한 법률(1978) 제정 및 정보자유위원회 설치
 - * 영국 : 데이터보호법(1998) 제정 및 정보커미셔너 설치
- UN은 ‘전산처리된 개인정보 파일의 규제지침(1990)’을 통해 6개 원칙을 제시하고 각국의 실정에 맞추어 채택하도록 권고
 - * 6개 원칙 : 합법성과 공정성의 원칙, 정확성 원칙, 목적 구체화의 원칙, 개인접근의 원칙, 비차별 원칙, 안전성 원칙

□ 캐나다

- 공공은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1983), 민간은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 문서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01)으로 규율
- 연방프라이버시커미셔너가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반을 관리
 - * '기업과 단체를 위한 지침'을 공표하고 국민 인식제고에 주력
- '02년부터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의무시행' 제도 도입

□ 미 국

- 각 영역별 필요에 따라 개별입법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 '세이프하버 원칙(2002)'을 설정하여 EU와 유사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경주
 - * EU와의 상거래 등에서 'Safe Harbor'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개인정보 이전 금지 등의 제재로부터 면책
- 전자정부법(2002) 제정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 도입

□ 일 본

- '03년 종합적인 법제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5개 법률 공포
 - 총무성이 행정기관에 대해, 내각부가 민간·공공부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장
- 인정(認定) 개인정보보호단체가 '관련 지침마련', '개인정보처리자 고충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자율규제 실시
 - *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는 소관부처가 자율규제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일부 업무수행을 인정한 단체로, 일본데이터 통신협회 등 35개 인정('08.9.)

참고

해외 주요 개인정보보호정책 비교

구 분	유럽연합(EU)	미 국	일 본
개인정보 정의	•식별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	• 이름, 사회보장번호, 의료 기록 등 개인의 기록	•생존하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
보호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	•특정한 기준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개인 기록의 묶음(기능·지리적 집중여부는 무관)	•자동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구조화된 수동 파일링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인정보	•자동·수동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개인정보
추진 기구	•국가별 상이한 추진기구	•예산관리국(OMB) •연방거래위원회(FTC)	•총무성 •내각부
규제 주체	•국가주도 : 국가별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민간 주도 : 정부지원 및 민간 기구(경영개선이사회 등)	•민간 주도 : 정부지원 및 민간 기구(정부가 인정한 개인정보보호단체)
주요 법률	•EU지침에 맞는 입법 의무화 - 독일 : 연방정보보호법 - 영국 : 데이터보호법 - 이탈리아 : 개인정보처리시 개인의 보호에 관한 법률	•프라이버시법 •전자정부법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체계	•단일법이 일반적이나 국가별 상이함	•개별법주의	•기본법+개별법
법·제도 특 징	•국가별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 •일원화된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구 및 EU지침에 맞는 법 제정 의무 •EU보호체계보다 미흡한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금지	•영역별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별법적 접근으로 사회적·문화적 특수성 반영 가능 •민간부문에 대한 자율적 규제(정부는 자발적 참여 유도)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공공·민간을 포괄적으로 규율(행정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는 개별법으로 규율) •독립된 감독기구의 부재
기 술	•EU 연구개발조직에 의한 체계적 기술개발 •회원국간 R&D 역량 강화 및 결속을 위한 추진체계 확보	•대학중심의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프로젝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제도마련을 위한 각종 TFT 설립 등	•민간연구소 중심의 기술 개발 연구 수행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부문별 암호, 인증기술, 개인정보 보호 대책사업 연구개발 진행
인력양성 및 인식제고	•회원국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노력 추진 -Safer Internet 등	•연방사이버서비스(FCS: Federal Cyber Service)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정보윤리교과과정 개설 •자격제도 정비

Ⅱ. 비전 및 전략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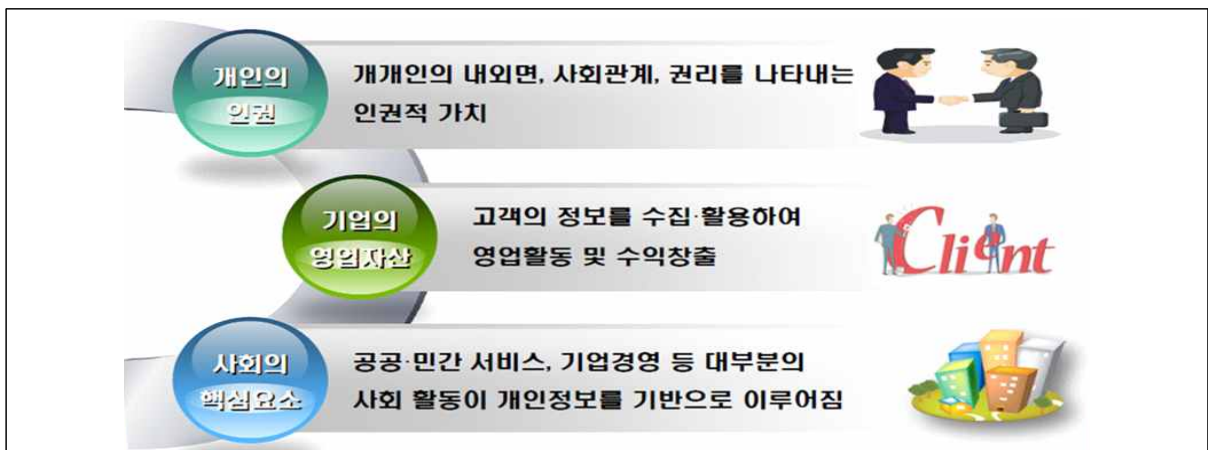
정책환경 : 선진 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 ◇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는 인권적·경제적 가치를 함유
- ◇ 개인정보보호는 선진 정보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

□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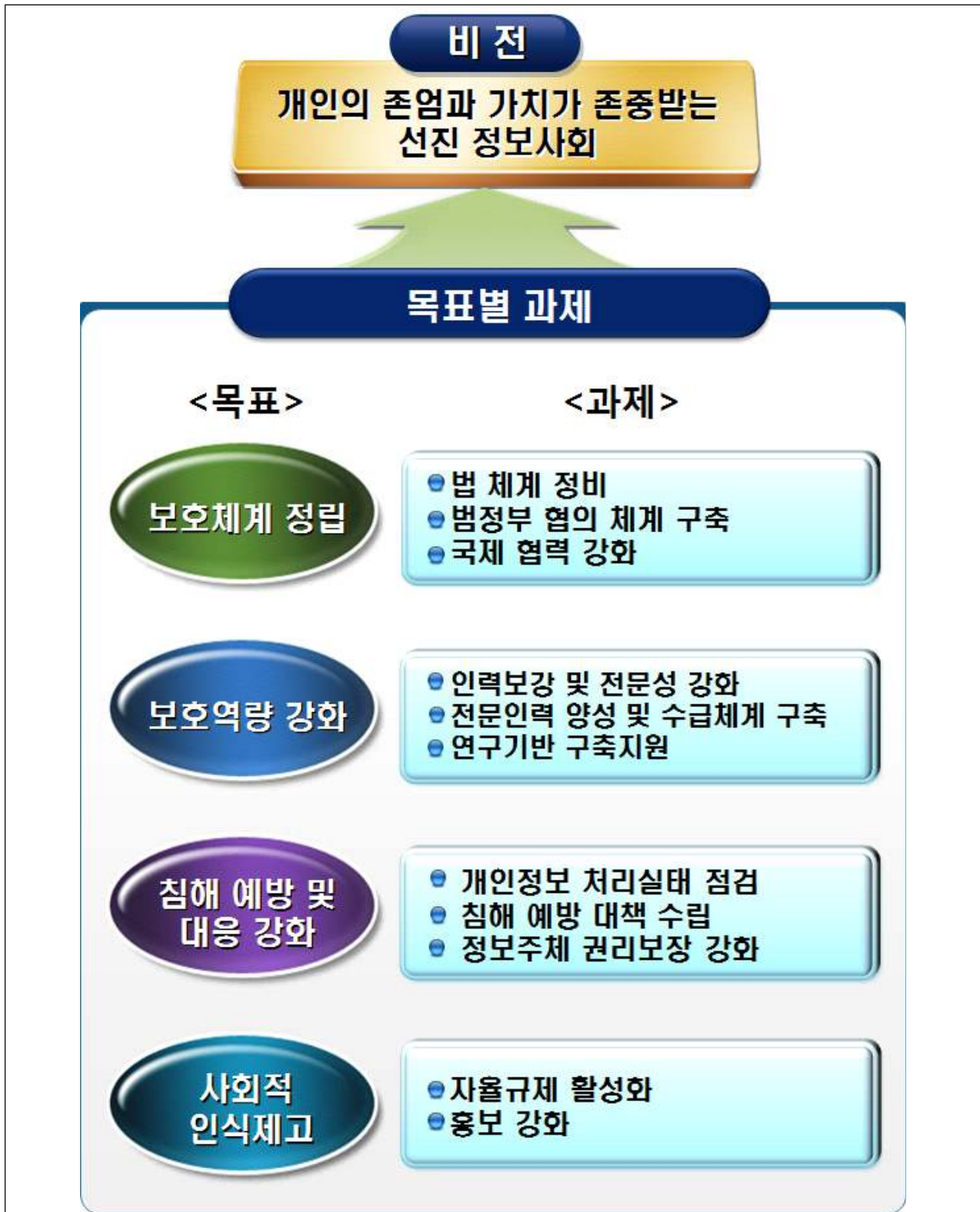
-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권, 기업의 영업 자산, 사회 활동 기반 등 복합적 가치 내재
- 개인정보 침해시 개인은 정신적 피해 및 금전적 손해, 기업은 이미지 실추, 브랜드 가치 하락 및 집단손해배상 등에 따른 재정적 손실, 국가는 신뢰도 하락 및 프라이버시 라운드에 따른 수출 애로
- ▶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조사결과, 99.5%가 ‘개인정보보호’를 중요 문제로 인식(KISA, 2010)

<개인정보의 가치>



□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선진 정보사회로의 도약

- 개인정보의 활용과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보호노력이 균형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선진 정보사회 구현 가능
- 특히, SNS 등 새로운 IT 환경하에서 개인정보보호는 고도 정보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기반으로 작용



◇ 범정부 역량 결집, 민관 협업의 거버넌스 및 국제협력을 토대로 선진적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 범정부 역량 결집

- 개인정보 관련 주요 부처와 지자체, 전문기관 등 정부 역량 결집
 - * 주요부처 : 행안부·방통위·금융위·교과부·복지부 등
 - * 전문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 정부 협의체 운영, 지자체와의 합리적 업무배분,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한 범정부 통합적 정책 추진

□ 민관협업의 거버넌스

- 공공·민간의 효율적 역할 배분 및 협업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시너지 효과 극대화
- 정부는 제도적·기술적 기반 구축, 처리자는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정보주체는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한 의식 수준 향상을 통하여 국가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 국제협력 기반의 정책추진

- 인적·물적 국제교류 증대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일상화에 대비한 기반 구축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Ⅲ . 과제별 추진방안

1. 개인정보보호 체계 정립

- ◇ 일반법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정비
- ◇ 범부처 협의체 구성을 통한 통합적 정책 수립 기반 마련
- ◇ 국제기구 참여 및 국가간 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공조체계 구축

과제1 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 정비

□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 정비

- 일반법 지위를 갖는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다수의 법률이 분야별 개인정보의 수집·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유사위반 사항에 대한 적용 법률 혼란, 중복규제 등 문제점 발생
-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원칙에 정합성을 갖도록 개별법령 체계 정비

< 개인정보 관련 법률 >

	일반법	개별 법률		
		분 야	법 률 명	기 타
현 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행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주민등록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통계법 등	변호사법 법무사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공인노무사법 외국환거래법
		정보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공증인법 은행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직업안정법
		금융/ 신용/ 상거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신고 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 제317조 등
		의료	보건 의료 기본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교육	교육기본법, 학교보건법 교육정보시스템의운영등에관한 규칙 등	

□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법체계 정비

- FTA 등 자유무역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개인정보의 국제적 공동 활용 등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연구
 - * 전문기관, 학술단체 등과 함께 무역확대 및 국가간 개인정보 공동 활용 증가 등에 대한 대책 연구
- IT정보의 국제적 활용 확대와 프라이버시라운드 체제에 부응하는 국제기준의 법체계 구축
 - 국제규범, 조약 등에 부합하도록 국내법 체계 정비
 - * 필요시 외교통상부 등과 협의하여 조약 등 정비 검토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기준 정비

- 각 부처별로 정보통신, 금융 등 소관 업종별 개인정보 보호 취지, 처리(수집·이용 등) 형태 및 보호 요구수준 분석
- 정보통신, 금융·보험, 복지·의료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침·해설서 등 마련·보급
 - * 행안부의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소관 법령별 지침·해설서 작성(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추진일정 및 주관기관

추진사항	일정			주관기관
	'12	'13	'14	
개인정보 관련 국내 법체계 정비				- 주관 : 행안부 - 관련 : 방통위, 금융위 등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법체계 정비				- 주관 : 행안부 - 관련 : 방통위, 금융위 등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기준 정비				- 주관 :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교과부, 복지부 등 - 관련 : 분야별 단체 등

과제2 범정부 협의체계 구축

□ 정부 협의체 구성·운영

○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정부 협의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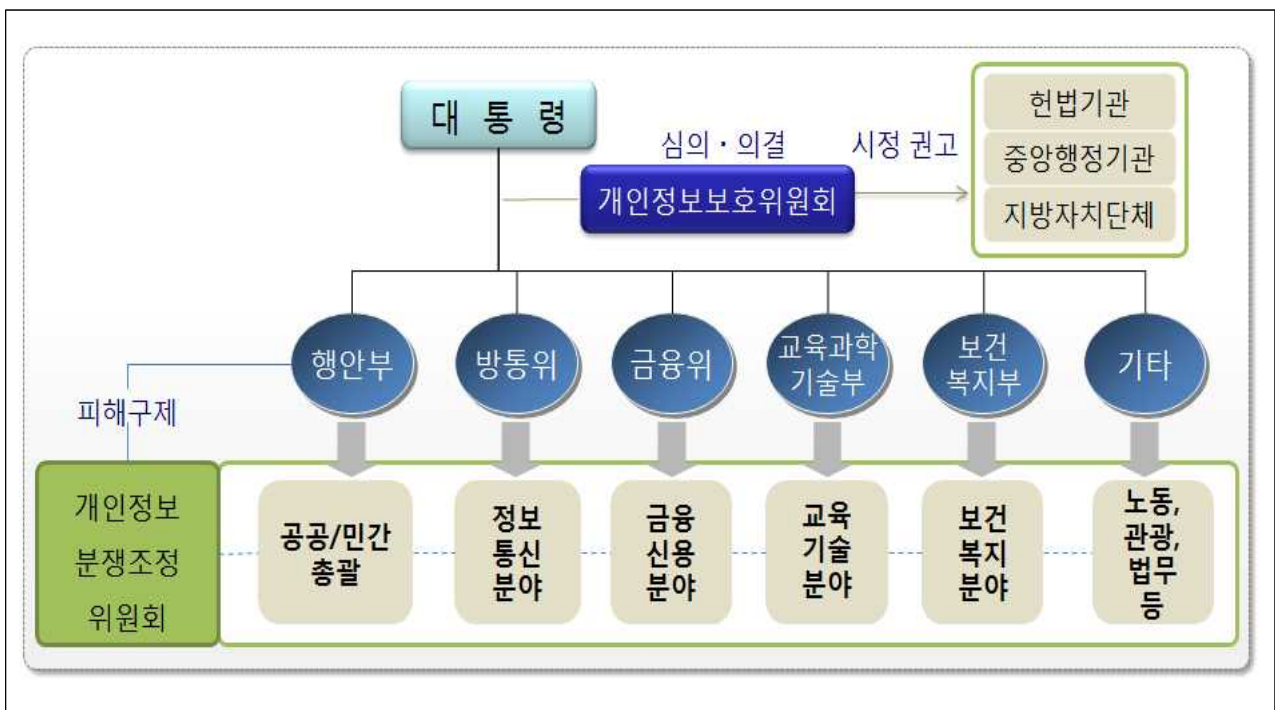
-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복지부, 교과부 등 관련 부처 실·국장급 협의체 및 과장급 실무 추진체 구성

* 실·국장급 협의체는 연 2~4회 정기협의, 실무 추진체는 사안 발생시 수시 협의

○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사례 및 솔루션 공유를 통해 소관 분야별 정책 수립·시행시 정합성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로 활용

* 부처간 이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기능 활용(개인정보보호법 제8조)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집행업무를 위임하는 방안 검토
 - 현지점검·조사, 개선권고, 시정조치 요구,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집행 업무 위임
- 전문적인 연구, 교육·홍보, 기술개발 등의 업무는 전문기관 위탁 추진
 -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 심의·의결 기능 수행
- 독립성 보장을 위해 예산 편성 및 인사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의 ‘중앙관서’ 직위, 공무원임용령 제2조의 ‘소속장관’ 직위 부여

추진일정 및 주관기관

추진사항	일정			주관기관
	'12	'13	'14	
법정부협의회 구성·운영				- 주관 :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교과부, 복지부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 주관 : 행안부, 방통위 등 - 관련 :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 주관 : 행안부, 기재부 - 관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제3

국제협력 강화

□ 적극적인 국제기구 참여

- OECD, APPA, ICDPC, GPEN 등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 국제기구 회의 등을 통해 우리 개인정보 보호제도 적극 홍보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이슈(SNS,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폰 등)에 선제적 대응
- 기관별로 국제 개인정보보호기구 가입 추진
 - '11년 현재 행안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4개 회원자격 보유, '14년까지 국가 전체적으로 10개 이상 회원자격 보유 추진
 - * 국제기구 가입현황 : 행안부(GPEN), 한국인터넷진흥원(APPA, ICDPC, GPEN)
- 범정부 차원에서 '세계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ICDPC)' 총회 유치 추진
 - 국제선도 전기 마련 및 개인정보보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 >

-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 기구
 - 한국,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마카오,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홍콩 10개국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국제협약체
- ICDPC(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 국제 개인정보보호 기구회의 - 세계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에 대해 공동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제기구로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성
- GPEN(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 : 글로벌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 OECD 권고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로, 회원국간 개인정보 이슈와 경험 등을 공유하고 국가 간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

□ 국가간 협력 강화

- 개인정보 국외이전, 국외 개인정보 침해 대응을 위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 개인정보 수집위치와 저장·관리 위치 등의 국가 간 분산에 따른 법 적용 문제, 개인정보 침해시 법 집행 문제 등에 적극 대응
-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인접 국가와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로부터의 빈번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 구성
 - 인접국 협력체를 점진적으로 경제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 국가를 포함한 ‘아시아권 협력체’로 확대
 - * 상호 발전과 교류를 위한 전략적 MOU 체결 등
- 개인정보보호 취약국가 대상 컨설팅 실시
 - * 글로벌 정보격차해소 사업 등 기 추진 사업과 연계

< 국외 해커로부터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대응 >

- 중국 해커로부터 650만명 개인정보 600만원에 사고팔아...(동아일보, 2010.3.10)
- 최근 3년간('08년 190건, '09년 265건, '10년 상반기 126건) 중국으로의 주민등록번호 노출이 가장 많음(디지털데일리, 2010.10.8.)
- ▶ 중국 등 국외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 노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국가간 유기적 협조체제 미흡

추진일정 및 주관기관

추진사항	일정			주관기관
	'12	'13	'14	
적극적인 국제기구 참여				- 주관 :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통위 등 - 관련 : 전문기관, 민간기관 등
국가간 협력 강화				

2.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 ◇ 정부·민간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 ◇ 정규교육과정 개설, 자격증 제도 등을 통한 장기 인력양성·수급체계 구축
-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기반 구축 지원

과제1 개인정보보호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

□ 정부 개인정보보호 조직·인력 확충

- 관리·감독 대상이 많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인력 확충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감독 대상 확대 및 정책 수요 증가, 빈번한 대규모 유출사고에 적극 대응
 - * 현재, 행안부(19명)와 방통위(14명)에 전담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중앙행정기관은 소수의 인력(약0.5명)이 정보보호업무와 병행하는 실정
- 부처 소관 분야별 업무량에 따른 소요인력 일괄 확충 추진
 - 행정안전부에서 일괄하여 최소인력을 증원·배정하고, 추가 증원 또는 전담부서 신설 등은 부처별로 추진
 - * 중앙부처 인력 증원 : 평균 1.2명('11년) → 평균 3명('14년)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 교육 강화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 신규채용·승진자 교육 과정 등 기본교육과정의 정규과목으로 편성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교육과정 개설
 - e-러닝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교육 접근성 제고

○ 소관 부처별 자체 교육과정 개설·운영

- 정보통신, 금융, 복지·의료, 교육 등 전문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 소관부처별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직접운영

○ 사업자, 협회 등 민간단체 자율교육 지원

-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 지원
 - * 전문강사 확충 : 58명('11년) → 350명('14년)
-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 * 인증마크 부여 심사시 반영 등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교육이수 의무화 추진

□ 민간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지원

○ 대학 평생교육과정 등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지원

- 공공기관 개인정보 책임자·취급자 등의 '의무교육 이수과정'으로 인정함으로써 교육수요 확대
 - * 고용부 근로자 환급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 추진 지원

○ 교육 이수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과 기업체의 인력중개 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중개센터 개설 및 민간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추진일정 및 주관기관

추진사항	일정			주관기관
	'12	'13	'14	
정부개인정보보호 조직·인력 확충				- 주관 : 행안부 - 관련 : 각 부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 교육 강화				- 주관 :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교과부, 복지부 등
민간 교육훈련기관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지원				- 주관 : 행안부 - 관련 : 교과부, 고용부, 협회 등

과제2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체계 구축

□ 개인정보보호 정규교육과정 개설 지원

-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위과정 신설 및 실업계 고교 등의 전문학과 개설 추진
 - 고용 연계형 석사과정 등 개설을 통한 우수 자원 확보 및 전문인력 확대
 - * 기 설립된 정보보호 관련 학과의 전공 분야로 개설 추진(법·제도 등의 교육에 중점)
 - 수요가 많은 기업·경제단체 등과 고교·대학이 연계하여 산·학 협동과정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하는 기업이나 과정이수자 채용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 공무원 채용 시험과목에 개인정보보호 과목 신설

-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 개인정보 보호과목 신설 검토
 - * 각급 학교의 교육수요 확대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 제고 효과 기대
- 행정직은 선택과목으로 신설 추진하고, 전산직은 필수과목으로 '14년도 신설 예정인 '정보보호론' 과목의 출제범위에 포함

□ 개인정보보호 자격증 제도 활성화

- 국가자격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사 자격’ 도입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인력 공급
 - 부처 소관 분야별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신설 검토
 -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 우수 민간자격에 대해 국가공인 추진
 - 개인정보 처리 인력의 조기 확보 및 수준 제고
-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소지자 확충 : 11,000명('11년) → 20,000명('14년)

추진일정 및 주관기관

추진사항	일정			주관기관
	'12	'13	'14	
개인정보보호 정규교육과정 개설 지원				- 주관 : 행안부, 교과부 - 관련 : 각급 교육기관, 민간 기관 등
공무원 시험과목에 개인정보보호 과목 신설				- 주관 :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자격증 제도 활성화				- 주관 : 행안부, 방통위 - 관련 : 민간 자격증 운영기관

과제3

연구기반 구축 지원

□ 국가 개인정보보호지수 개발

- 국가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인식 수준 측정을 위한 ‘국가 개인정보보호 지수’ 개발
 - 공공·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보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마련
- 매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지수를 산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성과지표 및 각종 정책의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
 - * 소관분야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을 정부업무 평가지표로 활용 검토
- 향후, 지수의 국제화 추진으로 국가간 비교자료로 활용하고, 글로벌 선도 기회 마련
 - * 국가비교 지수사례 : 국가청렴도 지수(권익위), 국가브랜드지수(브랜드위원회) 등

□ 연구단체·학회 등 설립·운영 지원

- 민간의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및 정부정책의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전문 연구단체·학회 등 설립 지원
 - 다양한 분야의 학자·전문가·기업인·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학회 등 설립
- 학술회의 개최, 논문집 발간 및 국제협력 등 운영 지원
 - 정책이슈 발굴, 조사연구, 통계 산출 등 기초연구, 정책사례 등의 정기적 발표 및 논의 추진
 -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한 정기학술대회 개최 및 정기 학술지 발간 등

□ 신기술 대응 연구·개발(R&D) 지원

- 클라우드 컴퓨팅, SNS, 스마트폰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적극 파악하고 대응책 마련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개인정보 '신기술 대응지원단' 신설 추진
 - 각종 민원상담, 신기술 연구결과, 국내외 동향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책적·기술적 대응 방향 모색
- 대학·민간 연구기관 등 지원을 통한 신기술 개발 추진
 - 시장성은 낮으나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기술을 파악하여 민간연구기관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 각 분야별 예산 확보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중 정보보호 분야 R&D 기금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지원

추진일정 및 주관기관

추진사항	일정			주관기관
	'12	'13	'14	
국가 개인정보보호지수 개발				- 주관 : 행안부 - 관련 : 전문기관
연구단체·학회 등 설립 지원				- 주관 : 행안부 - 관련 : 대학, 전문기관 등
신기술 대응 연구 지원				- 주관 : 행안부, 방통위 등 - 관련 : 공공기관, 민간 연구기관

3.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 ◇ 상시 실태점검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의 안전성 확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최소화를 통한 개인정보침해 사전 차단
-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자기정보 결정권 보장

과제1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 정부합동점검단 구성·운영

-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복지부, 교과부, 고용부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점검단 운영
- 공공·민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범정부적 실태 조사 및 대응책 마련 기구로 적극 활용

□ 공공기관 민원서식 및 사업자 약관 등 일제 점검·정비

- 공공기관의 민원신청서식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행적 개인정보 수집 근절
- 민간 사업자의 각종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 서식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요구 서식 정비 조치

□ 민·관 개인정보파일 운영실태 조사

- 공공기관 및 민간의 일정 규모이상 개인정보파일 운영실태 조사
 - 개인정보파일 보관 필요성, 최소수집원칙 준수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실태, 공공기관 파일 등록 이행여부 등 점검
- * 공공기관은 행안부가, 민간은 소관 부처별로 실시

- 점검결과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일에 대하여는 파기요구, 위험요소 노출 파일에 대하여는 보완·시정 조치

□ 불법유출 개인정보 사용실태 조사

- 불법매매, 명의도용(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 등) 등 불법유출 개인정보 사용 현황을 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일제 조사
- 불법 유출 개인정보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주민등록번호 유·노출 상시 모니터링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유·노출 모니터링 상시 실시
- 유·노출 주민등록번호 즉시 삭제 의무화 제도 도입 검토
- 사업자 단체 등의 '자체 모니터링' 지원
 - 개인정보처리자 및 협회별로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행안부 및 소관부처)

추진일정 및 주관기관

추진사항	일정			주관기관
	'12	'13	'14	
정부합동점검단 구성				- 주관 :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교과부, 복지부 등 - 관련 : 전 부처
공공기관 민원서식 및 사업자 약관 등 일제 점검·정비				- 주관 : 행안부, 금융위, 교과부, 복지부 등 - 관련 : 전부처, 민간 사업자
민·관 개인정보파일 조사 실시				- 주관 :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교과부, 복지부 등 - 관련 : 전 부처, 민간사업자
불법 유출 개인정보 이용실태 조사				- 주관 :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검찰청, 경찰청 등 - 관련 : 전부처, 민간 사업자
상시적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 주관 : 행안부, 방통위 - 관련 : 전부처, 민간 사업자

과제2

침해 예방 대책 수립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도 개선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및 유출 최소화 대책 마련
 - 주민등록번호가 본인여부·연령확인 및 연계 시스템간 기준값(key)으로 폭넓게 사용됨에 따라 유출 급증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만 수집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 ‘주민등록번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및 추진
- 주민등록번호 DB와 연결된 관리자 PC에 대해 인터넷망과 분리 의무화 검토
 - 행정기관은 재정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 * 현재 44개 정부부처 망분리 완료
 - 민간은 유출사고가 빈발하는 금융, 게임 등의 업종에 시범 적용 후 의무화 검토
- 인터넷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강구
 - I-PIN,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 * I-PIN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의 발급 가능 홍보

□ 침해예방 제도 보완

- 분야별 안전성 확보기준 보완
 -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 금융, 복지·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기준 정비 및 매뉴얼 보급

-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민간부문 대규모 파일처리자까지 확대 검토
 - *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파일에 적용 의무화
 - ▶ 영향평가 자격기관 확대 : 6개('11년) → 30개('14년)
- 영향평가가 어려운 중소 사업자를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자체 진단 유도
 - * 자가진단 프로그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요 조치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문답형 프로그램

□ 중소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지원

- 업종별 교육 및 현지 컨설팅 적극 실시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 계정 관리, 물리적 접근제한 등 기본적 관리능력 습득 지원
- 행안부 기술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강화
 - 온라인 상담 및 취약점 점검, 원격 수준진단 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보호 S/W 염가 또는 무료 제공방안 검토
 - * 공동구매 대행, 5인 미만 영세업자용 무료 프로그램 제공 등

추진일정 및 주관기관

추진사항	일정			주관기관
	'12	'13	'14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도 개선				- 주관 : 행안부, 방통위 - 관련 : 전부처, 지자체
침해예방 제도 보완				- 주관 :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교과부, 복지부 등 - 관련 : 민간기관 등
중소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지원				- 주관 : 행안부 - 관련 : 전 부처,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

과제3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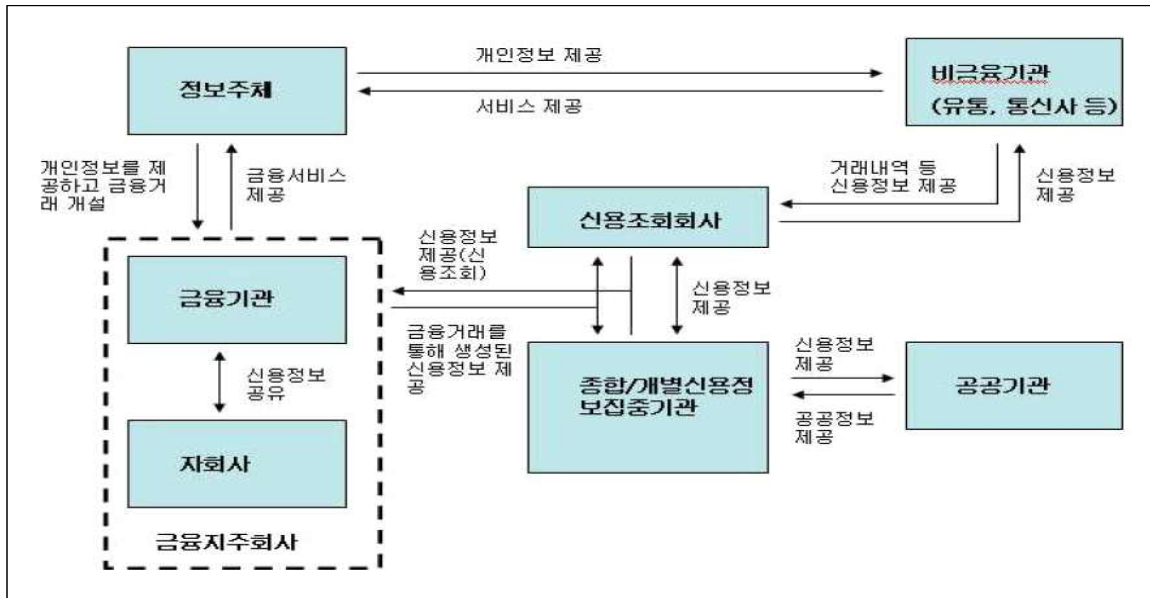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 신속한 사건 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한 조정부 운영 활성화
 - 금융, 정보통신, 복지·의료 등 전문 분야별로 조정부를 구성하고 경미한 사안은 가급적 조정부에서 신속 처리
 -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확대(50만→350만),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에 따른 분쟁신청 급증 예상
- 사무국 역량 강화
 - 사무국 독립성 확보 및 조정부 심의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증원
 - 분쟁조정에 필요한 조사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

□ 자기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보장

- 기관별 개인정보 흐름지도(Flow Map) 공시 제도 도입 검토
 - 개인정보처리를 투명화하기 위해 (처리자간)개인정보흐름 지도 작성 및 홈페이지 등 공시를 의무화
 - * 흐름지도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제공한 정보의 흐름(제공, 위탁 등)을 이해 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정보결정권(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 등) 보장에 기여
 - 기관별 공시 내용을 산업별로 정리한 전체 개인정보 흐름지도를 제작하여 정보주체 권리보장 정책 수립에 활용

<예시 :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흐름지도(신용조회회사)>



○ 개인정보 열람청구 지원

- 공공부문 개인정보 열람청구 일괄접수시스템을(한국정보화진흥원) 고도화하여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열람청구내용 실시간 통지
 - * 현재는 공공기관 중 중앙부처 등 일부만 실시간 통지
- 민간부문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현황 및 조치실태 조사

- 개인정보보호지수 조사 항목에 포함하여 조사 실시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추진일정 및 주관기관

추진사항	일정			주관기관
	'12	'13	'14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 주관 : 행안부 - 관련 : 전문기관
자기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보장				- 주관 :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교과부, 복지부 등 - 관련 : 전부처, 민간사업자

4. 사회적 인식제고

-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촉진
- ◇ 실천문화 확산, 분야별 홍보 등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과제1 자율규제 활성화

□ 자율규제 문화 조성

- ‘개인정보보호 범국민 운동본부’ 설치 추진
 - 사회 저명인사, 개인정보보호 유관기관, 포털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본부 구성
 -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실시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 발굴, 지정 및 육성
 - 소관 부처별로 자율규제 단체 지정 및 육성(’11년 3개→’14년 30개)
 - * 부처별로 소관 분야 협회 등을 지정육성하고, 컨설팅교육 사업 등을 지원
 - 소관 부처와 주요 사업자 단체간 자율규제 협약 체결
 - * 전경련-행안부, 금융협회-금융위, 인터넷협회-방통위, 학원협회-교과부, 의사협회-복지부 등(’11년 0건 → ’14년 30건)
 - 자율규제 단체별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우수단체에 대해 포상, 연구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자율규제단체에 대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한 지원 검토

○ 업종별 자율규약 제정 지원

- 자율규제 단체, 사업자 단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약 제정을 지원
- 외국의 사례를 폭넓게 조사하여 자율규약의 방향·내용·운영 방법 등을 제시
 - * 일본의 경우 사업군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지침을 각 인정(認定) 개인정보보호단체가 주관하여 제정

□ 국가 인증마크제 도입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추진을 위해 등급별 인증마크제 도입

- 개인정보 관리체계, 보호활동 정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등급인증
 - * 국내 유사 인증제도(ePrivacy, PIMS 등) 등과 조화 도모

○ 인증 마크 획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 * 정부기관은 기관평가에 반영, 민간은 행정처분 및 분쟁조정시 심사 기준에 반영 등

추진일정 및 주관기관

추진사항	일정			주관기관
	'12	'13	'14	
자율규제 문화 조성				- 주관 :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교과부, 복지부 등 - 관련 : 전부처, 민간사업자
국가 인증마크제 도입				- 주관 : 행안부 - 관련 : 방통위, 기재부, 공공기관 등

과제2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

□ 실천 문화 확산

○ ‘개인정보보호의 날’ 제정

- 국민의 관심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의 날(또는 주간)’ 제정
 - *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공포된 3월29일 또는 3월29일이 포함된 주간을 지정
- 정부 주관으로 연례적 기념식을 개최하고 유공자 포상 실시
 - * 세미나,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 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개최

○ ‘개인정보 삭제 범국민 운동’ 실시

- 불필요하게 유통되는 개인정보 삭제를 위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국민 캠페인 추진
 - *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인터넷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 TV·신문 등 언론과 SNS 등 뉴미디어를 최대한 활용
-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을 실시하여 온라인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삭제 계기로 활용
 - * 「1인 1 I-PIN 갖기 운동」과 병행 추진

□ 분야별 홍보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

-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12.3.29) 종료 전 집중 실시
 - * 신문·TV·UCC·대형포털 등을 활용한 입체적 홍보 실시
- 입법취지, 필요성, 법적 의무사항 등 사업자 등이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국민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소중히 다루는 ‘주인의식’ 고취

○ 분야별 자체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정보통신, 금융, 교육, 복지·의료 등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특성을 토대로 홍보계획 수립·시행

* 국가 개인정보보호지수조사를 통해 분야별 보호수준 진단

- 소관 부처별로 우수사례 발굴·확산 전파

* 행정안전부에서 분야별 우수사례를 모아 교육자료로 활용

□ 미래세대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산

○ 개인정보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초·중등 교육 지원

- 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전문강사, 보조교재 등 지원

○ 초·중·고 ‘개인정보보호 경시대회’ 개최

- 전문기관, 유관부처 및 학회 등과 공동 개최

- 청소년에게 개인정보보호전문가로의 성장 동기 부여

* 정보과학회, (주)인텔,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우수 IT인력 양성·발굴을 목적으로 매년 ‘정보올림피아드’ 개최

추진일정 및 주관기관

추진사항	일정			주관기관
	'12	'13	'14	
실천문화 확산				- 주관 :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교과부, 복지부 등 - 관련 : 전부처, 민간 사업자, 시민단체
분야별 홍보 강화				- 주관 : 전부처 - 관련 : 민간 사업자
미래세대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산				- 주관 : 행안부, 교과부 - 관련 :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참 고 자 료

과제별 소관기관 및 추진 일정표 [종합]

과 제 명			기 간	주 관	관 련
개인 정보 보호 체계 정립	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 정비	개인정보 관련 국내 법체계 정비	'14년 하반기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등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법체계 정비	'14년 하반기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등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기준 정비	'12년 하반기	행안부/방통위/금융위 /교과부/복지부 등	민간단체
	범정부 협의체계 구축	범부처협의체 구성	'12년 상반기	행안부/방통위/금융위/교과부/복지부 등	전부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14년 하반기	행안부/방통위 등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13년 하반기	행안부/기재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 협력강화	적극적인 국제기구 참여	'14년 하반기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통위 등	전문기관, 민간기관 등
		국가간 협력 강화	'14년 하반기		
개인 정보 보호 역량 강화	개인정보 보호 인력 보강 및 전문성 강화	정부 개인정보보호조직 인력 확충	'13년 하반기	행안부	각 부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 교육강화	계속	행안부/방통위/금융위 /교과부/복지부 등	민간단체
		민간 교육훈련기관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지원	'14년 하반기	행안부	교과부, 고용부, 협회 등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 정규교육과정 개설지원	'14년 하반기	행안부/교과부	각급 교육기관, 민간기관 등
		공무원 시험과목에 개인정보보호 과목 신설	'14년 하반기	행안부	교과부 등
		자격증제도 활성화	'14년 하반기	행안부/방통위	민간 자격증 운영기관
	연구기반 구축지원	국가 개인정보보호지수 개발	'13년 하반기	행안부	전문기관
		연구단체·학회 등 설립지원	'14년 하반기	행안부	대학, 전문기관 등
		신기술 대응 연구 지원	'14년 하반기	행안부/방통위 등	공공기관, 민간 연구기관

과 제 명			기 간	주 관	관 련
침해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정부합동점검단 구성	' 12년 상반기	행안부/방통위/금융위 /교과부/복지부 등	전 부처, 민간 사업자
		공공기관 민원서식 및 사업자 약관 등 일제 점검·정비	' 12년 하반기	행안부/금융위/교과부 /복지부 등	전 부처, 민간 사업자
		민·관 개인정보파일 조사 실시	' 12년 하반기	행안부/방통위/금융위 /교과부/복지부 등	전 부처, 민간 사업자
		불법 유출 개인정보 이용실태 조사	' 12년 하반기	행안부/방통위/금융위 /검찰청/경찰청 등	전 부처, 민간 사업자
		상시적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강화	' 14년 하반기	행안부/방통위/금융위	전 부처, 민간 사업자
	침해 예방 대책 수립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도 개선	' 13년 하반기	행안부/방통위	전부처/지자체
		침해예방 제도 보완	' 14년 하반기	행안부/방통위/금융위 /교과부/복지부 등	민간기관 등
		중소 사업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확보	' 13년 하반기	행안부	전부처,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기능강화	' 12년 하반기	행안부	전문기관
		자기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보장	' 12년 하반기	행안부/방통위/금융위 /교과부/복지부	전부처, 민간 사업자
사회적 인식 제고	자율규제 활성화	자율규제 문화조성	' 13년 하반기	행안부/방통위/금융위 /교과부/복지부	전부처, 민간 사업자
		국가 인증마크제 도입	' 13년 하반기	행안부	방통위, 기재부,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 보호 홍보 강화	실천문화 확산	계속	행안부/방통위/금융위 /교과부/복지부	전부처, 민간사업자, 시민단체
		분야별 홍보 강화	계속	전부처	민간 사업자
		미래세대 개인정보보호 의식 확산	계속	행안부, 교과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